

육아정책 소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1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계획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011년 1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도 유아학비 지원과 보육료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양부처 모두 지원액뿐만 아니라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유아학비 지원 예산은 '10년도 예산에 비해 1,242억 원 늘어난 6,395억원이고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예산은 '10년도 예산에 비해 3,000억 원 늘어난 1조 6천억원이다. 세부지원계획은 다음과 같다.

〈유아학비·보육료 세부지원계획〉

- 만 0~4세아 전액지원 대상 확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까지 전액 지원
 - 만 0~4세 지원대상 확대 소득하위 50% → 소득하위 70%
 - 만 0~4세의 경우 '10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던 것이 '11년부터는 만 5세아와 동일하게 지원단가의 100%를 균등 지원
 - 만5세아는 '10년과 동일한 기준(소득하위 70%이하)으로 전액지원

〈유아학비 정부지원단가〉

구분	국·공립 (단위: 원)		사립 (단위: 원)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만 3세	17,100~57,000	59,000	57,300~191,000	197,000
만 4세	17,100~57,000	59,000	51,600~172,000	177,000
만 5세	57,000	59,000	172,000	177,000

〈정부지원 보육료 금액〉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금액(원)	394,000	347,000	286,000	197,000	177,000	177,000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하위 70%	415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 7인이상 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지원대상 확대**
 - '10년에는 부부 중 낮은 소득금액의 25%만 차감하여 산정했던 것을 '11년에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계산
 - *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감액하여 계산
- **다문화가정·난민인정 유아에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학비·보육료 전액 지원**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종일반 이용 아동에게 종일반비 지원**
 - 1일 8시간 이상의 종일반 이용 아동에게 국·공립 월 30,000원 사립 50,000원 지원

보건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및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확대 시행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2월 11일(금)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예방접종시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영유아건강검진 서비스 및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0년부터 도입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11년부터는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영유아까지도 적기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36,425명에서 차상위 계층 영유아가 포함되어 총 60,875명이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 4, 5세 해당 연령대의 영유아 건강검진시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 역시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아동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보호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예방접종 일정 문자 안내 등 다양한 영유아 예방접종 편의 서비스가 '11년 새롭게 도입된다.

1)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를 조기에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입양가정 지원 확대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2011.2.18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11년부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입양시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도 증액하여 입양수수료 지원을 현실화해 간다고 밝혔다. 이러한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일반 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크지 않다는 점,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양육비 부담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양가정 지원 내용〉

지원내용	2010년	2011년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월 570천원/인	월 627천원/인
의료비	연간 252만원 한도	연간 260만원 한도
입양수수료	240만원	270만원
양육수당	월 10만원/인	
입양아동의료급여 실시 등	의료급여 1종	

보건복지부 27개 하위법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 활성화,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규제개선 분야에서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3월 3일(목) 입법예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르면 금년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문건물의 경우 현재 1~3층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보육실 지상 공간이 시설 공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규정의 예외규정도 마련된다.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

규제개선 분야	개정내용
사회적약자보호	- 자립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제시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확대
경제활성화	- 과태료부과금액 차등부과 및 경감규정 구체화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 보육료 소득산정기준에서 중상이자 간호 수당 제외 - 면허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인허가등 규제개선	- 보육시설 인가시 서류 간소화 - 직장·민간 보육시설 설치기준완화 - 보육시설 1층설치 원칙 예외규정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15일(화) 유치원 수업료 납부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은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아교육위탁기관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유치원 수업료 납부방식을 형행 분기납이었던 것을 월납으로 변경하는 것과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특례기간을 '11. 2. 28에서'13. 2. 28로 2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정보마당→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국·공·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등 징수금액(안 제6조)
- 유치원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안 제7조)
- 유치원 수업료 징수방법(안 제8조)
- 유치원 수업료 징수기일(안 제9조)
- 수업료 등의 반환사유 유형(안 제10조)
- 수업료 체납 등의 경우 처분 및 가산금(안 제11조, 제12조)
- 유치원 수업료 등 결정사항 및 조례 위임(안 제13조)
- 2011년 2월 28일 종료되는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201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교육과학기술부령 제854호 부칙 제2항)
-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의 입지조건, 구조 및 설비기준 신설 등 개정(별표 2)

교육과학기술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시범운영 계획 발표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28일(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 하는『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운영 학교 또는 유치원을 1차 공모결과 536교(원), 2차 공모결과 464교(원), 총 1,000교(원)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가정과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아침 6시30분~저녁 10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운영 기관에 따라 모형을 다양화하고 시간대를 확대하여 시간대별 운영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식사는 물론 돌봄과 교육을 병행하여 유아 및 초등학생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 및 자격증 소지자를 보육강사로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운영 계획 개요〉

● 운영 모형

- 모형 1: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 모형 2: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 모형 3: 유· 초등 연계 온종일 돌봄교실(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시설과 인력을 유· 초등 공동으로 운영 가능)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시간대별 구분

구 분	아침돌봄(신규)	오후돌봄(기존)	저녁돌봄(기존확대)
시 간	06:30~09:00	방과후~17:00	17:00~22:00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용 안내

이용대상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가정 및 맞벌이부부 자녀를 우선으로 하되 일반 희망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참여 가능 ※ 초등학교의 경우, 고학년 학생도 참여가능
이용시간	2011년 3월부터 연중 06:30~22:00 (조식과 석식 제공)
이용장소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로 지정된 학교· 유치원(1,000교)의 돌봄교실 ※ 돌봄교실 지정학교·유치원은 거주지 시·도교육청에서 확인 가능
이용료	무료(다만,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경우, 식비 관련 수익자 부담이 있을 수 있음)